

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(컨소시엄형) 신규과제 공모

2025년도 교육부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(컨소시엄형)
신규과제 선정 ·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16일

<주무부처>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
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

1. 사업개요

□ 추진목표

- 국가적 거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문사회 기반의 중장기 대규모 융복합 연구 추진

□ 지원계획(연구개시일: 9월 1일)

사업구분				지원대상	지원규모 (과제당/연)	지원 기간	신규 과제수
인문사회 기초연구	글로벌 인문 사회융합 연구	연구소 지원형	컨소시엄형	5개 이내 연구소(기관)* 컨소시엄	2,000 백만원 이내 (간접비 포함)	5년 (3+2)	1과제 내외

- * 대학부설연구소, 공공 연구기관(출연연 포함), 민간 연구기관, 해외 연구기관 등
- ※ 회계연도 일치 기준에 따라 1차년도 연구비는 연간 지원규모의 50%(6개월분) 지급 (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총 연구기간 종료 후 마지막 연차로 편성)
- ※ 신규과제 접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신규과제 수 등 지원규모 변동 가능

2. 신청 및 수행제한

※ 신청 및 수행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협약 이후라도 선정 취소

□ 사업군/사업별 신청 및 수행 제한

- (지원구분)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

개인 및 공동연구군	집단연구군	성과확산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석·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·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(A,B유형)· 개인연구지원사업(신진 · 중견)· 공동연구지원사업(국내 · 해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·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· 인문한국지원사업(HK+, HK3.0)·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연구그룹지원형, 연구소지원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명저번역지원사업· 저술출판지원사업

- *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은 연구그룹지원형과 연구소지원형으로 구분되며 동일 사업임
- * '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(연구그룹형)의 사업군 조정*에 따라 2024년도까지 선정된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연구그룹형)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집단 연구군 내 연구책임자 중복 수행 허용. 단, 2025년도부터 집단연구군 내 연구책임자 중복 신청 및 수행 불가(신규/계속과제 공통 적용)
 - * (기존) 개인/공동연구군 → (변경) 집단연구군
- (연구책임자)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
 -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,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
 - * '25년에 한하여 집단연구군 상반기 연구개시 사업(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연구그룹형), 인문한국지원 (HK3.0))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경우, 하반기 연구개시 사업(인문사회연구소, 사회과학연구 글로벌 아젠다) 신청 가능(단,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연구그룹형·연구소지원형(국내/국외)) 신청했을 경우, 선정 여부 상관없이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컨소시엄형) 신청 불가)
 - * '25년 하반기 연구개시 사업(인문사회연구소, 사회과학연구 글로벌아젠다)에 신청했을 경우, 선정여부 상관없이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컨소시엄형) 신청 불가
 - * 단,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 산정 시, 기 수행중인 과제가 '과제 수 미포함' 사업에 해당되어도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/수행 가능
 - *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사업군 내 신청/수행 중복 가능
- (공동연구원) 사업군과 상관없이 현재 수행 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까지 수행 가능
- (연구소)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
 - 집단연구* 과제에 기 참여 중인 연구소는 신규 신청 불가하나,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수행 연구소는 신청 가능
 - * 인문사회연구소, 인문한국(HK+, HK 3.0),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연구소지원형)
- (사업) 동일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
 - *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그룹지원형 신규과제 신청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) 및 수행자, 연구소지원형(국내/국외) 신규과제 신청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) 및 수행자는 컨소시엄형에 신청 불가

□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및 정부 R&D 공통사항

- (2책 3공)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,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
 - *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
 -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* 이내 종료 과제**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
 - *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
 - ** 단, 연구기간 연장과제의 경우 종료일은 연장된 종료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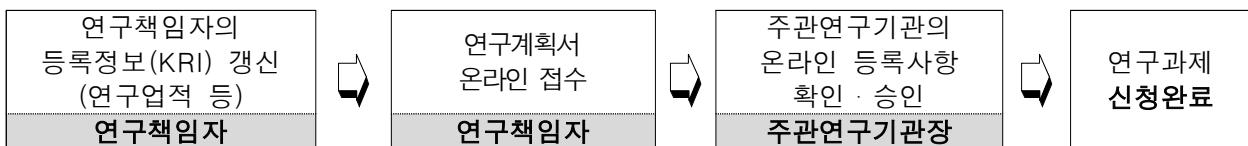
<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2책 3공 과제 수 미포함 사업 >

- ① 우수학자지원
- ② 인문사회연구소(문제해결형)
- ③ 인문학대중화
- ④ 사회과학연구지원(SSK)사업 중 연구집단지원
- ⑤ 학술단체지원
- ⑥ 연구윤리활동지원
- ⑦ 기초학문자료센터

- (신청제한) 학술연구지원사업(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)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
 -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
 - 다만, 연구과제 신청완료 이후 최종선정 전까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취소 등 조치
- (기타 제한사항)
 -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
*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
 -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·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(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)
- ※ 신규과제 중복/표절 이의신청 관련 과제에 대해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·중복 확인 시,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

3. 신청절차 및 기간

-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<https://ernd.nrf.re.kr>)에 로그인하여 신청



※ 세부사항은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

- 신청기간

사업구분		연구자 신청	주관연구기관 확인
인문사회 기초연구	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(컨소시엄형)	2025. 7. 3(목) 14:00 ~ 7. 16(수) 18:00	2025. 7. 3(목) 14:00 ~ 7. 22(화) 18:00

4. 평가방법

단계별	평가구분	평가내용	비 고
1단계	요건심사	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	한국연구재단
2단계	전공평가 (패널+발표평가)	사업 선정평가지표에 따른 평가	전공평가단
3단계	종합평가	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	종합평가단

※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,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신청요강 확인

5. 추진일정

일정	추진내용
2025년 6월	■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컨소시엄형) 신규과제 공고
2025년 7월	■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컨소시엄형) 신규과제 신청 접수
2025년 7월~8월	■ 신규과제 선정 평가
2025년 9월	■ 신규과제 연구 개시(9.1)

※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기타

- 세부사업별 신청요강 및 양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(www.nrf.re.kr) 참조
-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인건비의 전부를 기 계상한 경우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
-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
 - ※ 단, 『고등교육법』 제14조의2(강사) 또는 제17조(겸임교원 등)의 적용을 받아 임용되어 학교 소속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거나, 본 사업에 의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경우는 제외
 - ※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

7. 문의처

- 사업신청 및 평가 관련 문의: 한국연구재단(042-869-내선번호)

사업구분	사업신청 문의	사업평가 문의
	인문사회 연구소지원팀	문화융복합단
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사업 (컨소시엄형)	6134, 6137, 6138	6632

- 제도 · 정책관련 문의: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(044-203-6871, 6879)